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공탁보증보험 약관이 보험금 청구 요건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요구하는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관련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법리나 제726조의5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이 요건을 우회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가 파산면책을 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1. 사안의 개요

D는 원고 A, B(이하 ‘원고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 소유 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음. 그 과정에서 D는 피고 보험회사와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험회사가 발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해방공탁을 하였음.

참고로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가압류 채무자인 원고들이 부당가압류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보험계약자인 D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집행권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을 취득하여야 함.

그 후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D가 최종 패소하자, 원고들은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민사 법정이율 상당액과 실제 공탁금 이율 상당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D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해당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 A와 D 사이에서, 위 가압류와 관련하여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으로, 합계 2,736,596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이후 원고들은 위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약관상 요구되는 집행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을 제기함.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함.

2. 대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가. 관련 법리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과는 그 기본성격이 상이하므로 책임보험계약상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또는 유추적용 할 수는 없음
- 공탁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법 제726조의5에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공탁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가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나.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D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은 일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들이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피고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공탁보증보험과 책임보험의 법적 성격을 구별하고, 공탁보증보험의 약관상 보험금 청구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만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자력이 없는 공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분쟁에서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문이 공탁보증보험 약관상 요구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를 유의하여야 할 것임.

관련구성원

이원

변호사

02-316-4406

wlee@shinkim.com

문희춘

변호사

02-316-4051

hcmoon@shinkim.com

이동현

변호사

02-316-4263

dhelee@shinkim.com

조현재

변호사

02-316-1691

hjcho@shinkim.com

